

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(제8조제2항 관련)

1. 다음 각 목의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람의 정보

- 가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의 가구정보(가구정보는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
- 나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
- 다. 「국민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의 가구정보
- 라. 「한국전력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한 주택용(주거용으로 한정한다) 전기 사용자의 가구정보
- 마. 「수도법」 제7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한 가정용(가정용과 다른 용도로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 수도 사용자의 가구정보
- 바.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3개월 이상 가스요금을 체납한 가정용 가스 사용자의 가구정보

2.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가구정보

- 가. 「경찰법」 제2조에 따른 경찰서의 장: 범죄피해자
- 나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: 장기간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람,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사람, 「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,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은 사람, 치매환자 또는 장기요양자
- 다. 「소방기본법」에 따른 소방대의 장: 화재 피해자
- 라.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의 장: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

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자

마. 보건복지부장관: 「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으로 수집·관리 중인 자살시도자나 자해시도자

바.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장: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 또는 자금대출의 신청이 거절된 사람

3. 다음 각 목의 기관의 장이 다음의 정보를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아동(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 이하 같다)과 관련된 정보

가. 보건복지부장관

1) 삭제 <2023. 8. 29.>

2) 「아동복지법」 제28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·관리하고 있는 피해아동의 정보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의 정보

4) 「아동수당법」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인 아동 중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

5) 삭제 <2024. 6. 25.>

6) 삭제 <2024. 6. 25.>

나. 교육부장관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 각 호의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영유아 중 월별 이용일이 6일 미만인 영유아의 정보

2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의 대상인 영유아 또는 같은 영 제23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인 영유아 중 무상보육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기록이 없는 영유아의 정보

3)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 각 호의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유아 중 월별 교육일이 6일 미만인 유아의 정보

4)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통해 파악한 정보

다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

1) 최근 1년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, 같은 법 제

41조의4제1항에 따른 선별급여나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

2)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상·정신질환·성매개감염질환으로 최근 3년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나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아동의 정보

3)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상·정신질환으로 최근 3년간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나 「의료급여법」 제7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록이 있는 사람이 그 가구원으로 아동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정보

4)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5조제3항제2호의 영유아건강검진이 실시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

라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장: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인 아동의 정보

마. 질병관리청장

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한 기록이 없는 아동의 정보

2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생년월일과 성별 등으로 구성된 임시신생아번호 또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상태로 출생 후 1개월이 지난 후에도 남아있는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

바. 법무부장관: 「출입국관리법」 제3조, 제6조, 제7조 및 제28조에 따른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중 「아동복지법」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과 그 아동의 보호자의 정보

4. 다음 각 목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고 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

가. 「방송법」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수신료를 면제받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·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·의료급여 수급자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·청각 장애인의 「방송법」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 정보

나. 보건복지부장관이 「전기사업법」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

-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자 정보
- 다. 보건복지부장관이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 및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자 정보
- 라. 보건복지부장관이 「도시가스사업법」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사용자 정보

5. 그 밖의 정보

- 가.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장기관에 알린 지원대상자의 가구정보
- 나. 맞춤형급여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의 소득·재산 및 가구원에 관한 정보
- 다. 「고용보험법」 제15조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정보 보유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정보
- 라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 결과 수급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
- 마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정보 중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의 정보
- 바.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장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이 끝난 사람의 정보
- 사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정보
- 아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을 입은 사람의 가구정보
- 자. 「주민등록법」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같은 법 제10조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13조, 제16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당시 그 신고서에 기재한 연락처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·세대원의 전화번호
- 차.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시 조사된 사항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사실조사 대상자의 실제 거주 중인 주소

에 관한 정보 및 전화번호

- 카. 「주민등록법」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중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및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의 세대주·세대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등에 관한 정보
- 타. 「주민등록법 시행령」 제9조제5항에 따라 본인의 신청으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, 동 번호와 호수에 관한 정보 중 이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위기가구에 해당하는 세대주·세대원의 다가구주택 및 준주택의 이름, 동 번호와 호수
- 파.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와 「주거급여법」 제17조제3항 각 호의 자료
- 하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금대출 등 서민금융과 관련한 개인대출 정보
- 거. 별표 1 제12호, 제21호,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
- 너. 「한국전력공사법」 제2조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주택용(주거용으로 한정한다) 전기료 체납 추이, 전기 사용량 변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가구정보
- 더. 그 밖에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사회보장정보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